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1
----------	-----

발의연월일 : 2016. 7. 18.

발의자 : 박남춘 · 김철민 · 윤후덕  
이재정 · 민홍철 · 이찬열  
인재근 · 박재호 · 김정우  
신창현 · 전해철 · 박찬대  
김태년 · 김영춘 · 송영길  
소병훈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 제27조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사업, 법령, 정책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임에도 이번 지방재정개편제도와 같이 지방의 재원부담에 따른 중앙과 자체간 논란이 있어도 정작 자체는 안건상정에서부터 논의까지 어떠한 부분도 직접 참여하지 못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결정이 있어도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재원의 부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장을 위원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안건 상정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능토록 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항제2호).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u>행정자치부장관</u>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 <u>행정</u></p> <p><u>자치부장관</u> 또는 위원회의 위원-----</p> <p>-----</p> <p>-----</p>
<p>② · 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생략)</p> <p>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lt;후단 신설&gt;</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p> <p>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p>

	<p><u>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u> <u>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u> <u>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u> <u>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u></p>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